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53호 2018. 10. 1.(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해제기준 관련 기한연장 고시 ----- 4

공 고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5
-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4
-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50

기 타

- 시정알림판 ----- 81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8-14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81	마인계터로 24	2018. 10. 1.	건물멸실

목포시 고시 제2018-141호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해제기준 관련 기한연장 고시

1. 전라남도 고시 제2009-453호(2009.11.27), 제2011-408호(2011.11.18), 제2012-368호(2012.11.05) 및 제2017-350호(2017.10.1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1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일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일

목 포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1개소)

지 구 명	구 역 명	위 치	구역지정일	정비구역 해제일	비 고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1구역	전남 목포시 온금동 122-3번지 일원	2012.11.5.	2018.10.5.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0. 10. 5.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제6항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목포시 공고 제2018-1210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내용을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대장의 작성비치(안 제1조~제4조)
- 서류 송달의 절차(안 제5조)
- 부과 및 취소 및 변경 등 방법에 대한 절차(안 제6조)
- 시세 환급금의 처리 및 충당 방법에 대한 절차(안 제7조~제9조)
- 납세담보의 범위 및 통지서 전산처리(안 제10조~제1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제60조, 제65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8. 10. 1. ~ 2018. 10. 22. (21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행정자치부 개정권고안(표준안)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111 (2017. 3. 8.)
- 전라남도 세정과 - 3050 (2017. 3. 8.)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1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포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목포시 시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

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목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 52조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 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별지 제2호 서식] 송달부(교부)

[별지 제3호 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송달불능부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별지 제6호 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별지 제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별지 제8호 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 [별지 제3호 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illegible]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 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7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기분	책호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 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팀장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년	월	일	(인)	
팀장		정		리	부	등	재						
담당자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 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 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211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과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분배,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비밀유지 등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97조 ~ 103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74조의 3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의견 없음

7. 예산사항 : 관련부서와 협조

8. 입법예고 : 2018. 10. 1. ~ 2018. 10. 22.(21일 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시군세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기본안)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1612 (2018.5.11)
- 전라남도 세정과 - 5345 (2018.5.15)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1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회계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담당 부서장, 징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 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현 행	개 정 (안)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u><신 설></u>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선정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 원은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회계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담당 부서장, 징 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 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 다.</u> <u>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 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 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 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u> <u>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u> <u>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 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u><신 설></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u> <u>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u> <u>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u> <u>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u> <u>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u> <u>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u> <u>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u> <u>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u>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u> <u>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u> <u>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u> <u>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u>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문매각기관은 <u>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u> 1. <u>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u> 2. <u>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u> 3. <u>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 <u>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u> ③ <u>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제15조(비밀유지등) 전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생 략)	<u>제16조(배상책임)</u>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u>제17조 (현행과 같음)</u>

관계 법령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12. 26.]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채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

였을 때에는 채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채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채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채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채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채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채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0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채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채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채납자에게 지급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채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

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채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채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채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채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27.]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27.]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8. 3. 27.]

[별표] <신설 2018. 3. 27.>

수수료(제52조의3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공 매 진 행 단 계	수 수 료 율	최 저 수 수 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	0.6% 0.9% 1.2%	12만원 18만원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채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공매공고 후 매각 결정 전 매각결정 후 대금 납부 전	0.6% 0.9% 1.2%	12만원 18만원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를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 <2015. 6. 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

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212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목 포 시 장

1.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대장의 작성비치(안 제1조~제4조)
-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절차(안 제5조~제6조)
-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소인, 납기마감 처리(안 제7조~제9조)
- 체납액 정리표 및 세입마감, 미수납액의 이월(안 제10조~제13조)
-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통지서 전산처리(안 제14조~제18조)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에 관한 서식규정(안 제19조~제22조)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0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세회계법 시행령」 제49조
-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8. 10. 1. ~ 2018. 10. 22. (21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행정자치부 제정권고안(표준안)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111 (2017. 3. 8.)
- 전라남도 세정과 - 3050 (2017. 3. 8.)
- 전라남도 세정과 - 5345 (2017. 5. 15.)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1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 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포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 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 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

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 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른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

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2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3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갑)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1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12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13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14	매각재산의 인수증	

■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읍·면(동)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2호 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생년월일	납세자명	전화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 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7호 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 ○ ○기(월)분

(○ ○ 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증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성명(법인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u>주거 확인</u>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재산 확인</u>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생활상태 확인</u>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재조사 확인</u>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 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전라남도 목포 시세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 업무 수행 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 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전라남도 목포 시세 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관계 법령

[지방세 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27.]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시 정 알 림 판

2018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

- 신청기간 : 2018. 9. 12.(수)~10. 21.(일) [40일간]
- 대 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보급수량 : 11대(주택용)
- 지원기종 :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
- 접 수 처 : 공원녹지와 산림담당(목포시 수문로32, 3층)

공원녹지와 ☎ 061-270-3423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기간 : 2018. 10. 8.(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2018년 상반기 지원자 제외)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① (대상차량) '05.12.31. 이전 제작된 총중량이 **2톤 이상**
 -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목포시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 ③ (소유기간) 최종 소유자의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는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목포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 ④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 가동 판정** 받은 경유차량
 -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차량
 - ⑥ (미체납) **체납내역**(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이 없는 경유차량
- 지원절차 :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제출(소유자)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목포시) ⇨ 성능검사 후 대상차량 폐차 말소(소유자)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소유자) ⇨ 보조금 지급(목포시)
 - ※ 신청서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www.mokpo.go.kr)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환경보호과 ☎ 061-270-8674

2018 대한민국 유망축제 『목포항구축제』

- 기 간 : 2018. 10. 5.(금)~10. 7.(일) [3일간]
- 장 소 : 목포항 및 삼학도 일원
- 주요프로그램
 - **신명나는 파시 장터** : 파시 경매, 목포항 파시 수랏간, 어물전 난장 등
 - **가을바다 체험** : 카누·카약 승선 체험, 요트 탑승체험, 전통배 노젓기 체험 등
 - **기획·체험프로그램** : 맨 손 전어 잡기 체험, 도깨비 신부 목화체험, 드론 축구체험, 3D 프린터 체험 등
 - **폐막 행사 “바다콘서트”** : 10. 7.(일) 20:00~21:30, 김현정·울랄라세션·거미 출연



관광과 ☎ 061-270-8441~2

시 정 알 림 판

2018년도 민방위대원 1차 보충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8. 10. 16.(화)~10. 19.(금) [4일간]
- 교육시간 : 4시간(기본교육1, 실전훈련 3)
 - 오전반 09:00~13:00, 오후반 14:00~18:00
- 교육장소 : 목포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민원동 지하2층)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중 본교육 미이수자

안전총괄과 ☎ 061-270-3267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신청 안내



- 가입대상 : 부모 중 1명이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태아를 포함하여 막내가 만13세 이하(2005년 이후 출생)인 경우
- 가입방법 : 전국 농협(중앙 및 단위)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태아 포함의 경우)
- 카드혜택 : 연회비 면제(가입초년 제외), 학원업종 10% 할인, 서적 3% 할인, 도내 가맹협력업체 이용 시 5%~30% 할인(800여개) 등

※ 자세한 사항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홈페이지(jnhappy.bccard.com) 참조

농협영업점 ☎ 1644-4000 또는 비씨카드 ☎ 1588-4000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부대행사 소개

○ 수묵 목판 체험

판화에 먹물을 묻혀 한지에 찍어내는 수묵 판화 체험

- 행사기간 : 9. 1.(토)~10. 31.(수)
- 행사장소 :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앞 체험부스 / 진도 윤림산방
- 운영시간 : 09:00~18:00 무료 ※ 재료 소진시까지만 진행

○ 수묵 포토존

캐릭터 등 VR 작품을 이용하여 관람객이 인증샷

- 행사기간 : 9. 1.(토)~10. 31.(수)
- 행사장소 : 목포 (구)갯바위미술관 / 진도 금봉미술관
- 운영시간 : 09:00~18:00

○ 수묵 캘리그래피

수묵화 전공 대학생들이 관람객의 이름, 가훈 등을 수묵 문자도형식으로 작품화해 증정

- 행사기간 : 9. 1.(토)~10. 31.(수) ※ 주말, 추석연휴
- 행사장소 : 목포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앞 체험부스
- 운영시간 : 10:00~12:00/14:00~17:00 무료

※ 유료 관람객에 한해서 제공, 재료 소진시까지만 진행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 061-280-5898

